

## 7.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 改正 公布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 土地政策課

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의무화, 설계입찰제도개선, 부실벌점제도 및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들 제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시행규칙을 '95. 10. 12 개정 공포하였다.

1.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및 경력수첩 서식을 제정하여 '96. 6. 30까지 신고하록 하고,
2.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하여 건설업체는 5점, 용역업체는 3점, 건설기술자는 2점까지 감점하여 입찰감가자격심사 시와 다른법률에서 규정한 불이익 부여시 적용하되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및 책임감리용역, 50억원이상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부실추정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.
3. 건설기술용역 입찰방식을 종전에는 가격이 낮은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던것을
  -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자격 심사방식에 의하여 5~7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
  - 3억원이상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~7인을 선정한 후 이를 중에서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하여 2~3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며,
  - 1억5천만원이상의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방식에 의하여 5~7인을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현상공모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,

-5억이상의 설계용역과 책임감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내역을 동시에 입찰하게 한 후 기술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순으로 예정가격이내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4. 설계감리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,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및 주요구조물이 포함된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감리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다.

**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**